

▲ 양자와 친양자의 구분

구분	일반입양	친양자 입양 (양자와 친생자 차별가능성 배제) (아동복리를 고려한 강력한 입양)
성립요건	- 당사자간 입양의 <b>합의</b> - 성인도 입양 대상 가능 (다만 존속이나 연장자 x)	- 가정법원에 입양 <b>청구</b> - <b>미성년자만</b> 가능
친권행사	양부모	
피입양자 성과 본	친생부모	양부모
친생부모와의 관계	<b>유지</b>	<b>종료</b>
효력	- 입양 시점부터 혼인중의 자 - 친생부모와의 관계도 친권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 <b>(친족, 상속, 부양관계, 면접교섭권 유지)</b>	- 재판 확정시부터 혼인중의 자 -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 종료 <b>(친족, 상속, 면접 교섭권 종료)</b>
	을과 병이 갑을 (친)양자 입양 후 이혼, 병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게 된 경우에도 을과 갑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 혼인중의 자)	
효력 발생 시기	신고 제878조(입양의 성립)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b>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b>	<b>재판확정</b>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b>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b>

그동안의 입양제도는 입양을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법률관계가 그대로 유지돼 양부모가 친자처럼 키우는 데 걸림돌이 돼 왔다. 실제로 이런 점 때문에 입양을 꺼리는 이들 또한 적지 않았다. **일반입양의 경우 이중의 상속을 받지만 이중의 부양의무를 지게 되어 양자의 지위가 불안했음.** 따라서 더 강력하게 양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정법원의 엄격한 개입이 요구.**

(양자와 상속 실무 사례)

갑은 수년 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양자제도는 입양으로 친양자 관계가 성립되어도 친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여전히 존속됩니다. 이와 같은 양자에 대한 이중의 친자관계는 상속에서 이중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중의 부양 의무도 지게 되어 결국에는 양자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민법개정으로 도입한 친양자 제도(계약형 양자제도는 그대로 유지)는 양자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마치 '양친의 친생자처럼' 완전히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 동화되는 제도입니다.

즉 자녀가 입양을 통하여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실상으로도 친가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입양과 동시에 친생부모,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및 형제 자매 등의 자연 친자관계는 소멸되고,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양가의 일원으로 양모, 삼촌, 이모, 고모, 및 형제자매 등의 법적 친자관계를 형성하게 되어 호적에도 양친의 친자로 기재되게 된다는 점에서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친족관계의 절충형태인 일반양자와 다릅니다. 따라서 (계약형)양자제도상에서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친양자제도상에서는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갑이 일반입양에 의한 양자라면 1순위 상속인 갑은 양부모와 친생부모에 대하여 양쪽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가 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상의 배우자는 부 또는 처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 계모가 데리고 온 아들은 피상속인의 혈족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설령 계모의 아들을 귀하의 아버지가 호적에 입적시켰다고 하여도 양자로서 입양을 시키지 않고 단순히 인수 입적시킨 것에 불과할 경우 역시 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계모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계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분은 계모 1/5, 갑 1 이 되며, 분배율은 3/5 : 2/5가 될 것입니다.